

# 국내 보건복지 장기계획 수립 현황

이현지<sup>1,2</sup> · 김세린<sup>1,2</sup> · 장성인<sup>2,3</sup> · 박은철<sup>2,3</sup>

<sup>1</sup>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sup>2</sup>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sup>3</su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Current Status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Plans in Korea

Hyeon Ji Lee<sup>1,2</sup>, Selin Kim<sup>1,2</sup>, Sung-In Jang<sup>2,3</sup>, Eun-Cheol Park<sup>2,3</sup>

<sup>1</sup>Department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p>2</sup>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Korea is undergoing a rapid environmental change in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e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 total of 49 long-term plans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were specifi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site managed by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49 long-term plans, 10 plans (20.4%) were not yet fully constructed. Eight out of 10 non-constructive plans have been put into force for more than a year, but these plans still require further systematic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long-term plans is substantial to account for the changes in South Korean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a systematic plan with solidarity and continuity between the mutu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planning.

**Keywords:** Legislation; Health; Social welfare; Korea; Plan

### 서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질병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의 통일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건강한 양질의 삶에 대한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수립과 이행은 중요하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계획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정보를 동원하여 현재 마주한 문제는 해결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상황은 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1,2]. 이처럼 계획은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계획은 1-2년의 비교적 단기계획과 3-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장기계획은 정책의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정책을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준다[3]. 장기계획의 기능과 필요성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법률에서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법에서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과정, 수립 주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2]. 따라서 보건복지분야에서 계획의 필요성으로 인해 법률상으로 계획 수립이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준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보건복지 관련 장기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 관련 법률 중 법률상 수립이 명시된 장기계획을 확인하였다[4].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계획의 확인 여부에 따라 법적 명시된 장기계획의 수립 준수를 판단하였다. 각 장기계획은 보건복지부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정책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공공보건정책, 건강정책,

Correspondence to: Eun-Cheol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50-1 Yonsei-ro, Seodaemun-gu, Seoul 03722, Korea  
Tel: +82-2-2228-1862, Fax: +82-2-392-8133, E-mail: ecpark@yuhs.ac

Received: August 21, 2019, Revised: August 28, 2019, Accepted after revision: September 7, 2019

© Korean Academy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보건산업정책, 의약품안전정책, 사회복지정책, 인구정책의 7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Appendix 1).

### 1. 보건의료정책

법률상 수립이 명시된 보건의료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6건이다. 이 중 수립이 확인된 계획은 3건(50.0%)이었으며 미수립계획은 3건(50.0%)이었다. 미수립계획 3건은 (1) 보건의료발전계획, (2)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3) 전공의 종합계획이다. 미수립계획 중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2건(33.3%)은 법령의 시행 시점이 1년을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았다. 특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명시한 법 조항은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00년 7월 13일 시행되었으나 장기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 2. 공공보건정책

공공보건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10건으로, 이 중 5건은 질병에 대한 계획이었고 나머지 5건은 공공의료 관련 1건, 응급의료 관련 1건, 생명윤리 관련 3건이었다. 10건 중 9건(90.0%)의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1건(10.0%)은 미수립상태이다. 미수립계획은 생명윤리와 관련된 계획인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이었으며, 법 조항의 시행시기는 2017년 2월 4일로 2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 3. 건강정책

건강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7건이다. 7건 중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7조에 따른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 4조의 3을 근거로 2016년 2월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이 존재하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였다[5]. 따라서 건강정책과 관련된 장기계획은 7건(100.0%) 모두 국가 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이 존재한다.

### 4. 보건산업정책

보건산업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6건으로 (1)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2) 연구개발촉진계획, (3)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5)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이다. 6건(100.0%) 모두 국가 부처에서 수립한 계획이 존재한다.

### 5. 의약품안전정책

의약품안전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3건이며,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이 해당한다. 이 중 2건(66.7%)은 수립이 되었으나 1건(33.3%)은 미수립상태이다. 미수립 계획 1건은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으로 계획 수립에 대한 법 조항이 2018년 12월 11일 신설되어 2019년 1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 6.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8건이다. 이 중 수립된 계획은 6건(75.0%)이었으며, 미수립계획은 2건(25.0%)이었다. 미수립계획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2건 모두 법률 시행 일시가 1년을 경과하였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명시한 법 조항은 2017년 12월 30일 시행되었고,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관련 법 조항은 2016년 12월 30일 시행되었다.

### 7. 인구정책

인구정책 관련 장기계획은 총 9건이다. 이 중 6건(66.7%)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3건(33.3%)은 수립되지 않았다. 미수립계획 3건 모두 법률 시행 일시는 1년이 경과하였다. 미수립계획은 효행장려기본계획, 모자보건사업기본계획,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확인해보았지만 부재하였다[6].

## 고 찰

보건복지 관련 장기계획을 살펴본 결과, 장기계획(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률은 총 49건이었다. 이 중 장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는 10건(20.4%)이었으며, 법령의 시행 시점을 고려하여 시행된 지 1년 이내의 계획을 제외하고 1년을 경과한 계획만 따져보아도 8건(16.3%)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Table 1).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분야에서 법률상 계획 수 대비 미수립계획이 많았다. 법으로 명시한 보건의료정책 관련 계획의 건수는 6건으로 공공보건정책(10건), 인구정책(9건), 사회복지정책(8건), 건강정책(7건)분야에 비해 적었고 보건산업(6건)과 동일했으며, 미수립계획은 3건으로 인구정책분야와 공동으로 건수가 가장 많았으

**Table 1.** Current status of health and welfare long-term plans

Category	No. of Act	Constructed plans	Not constructed plans		
			Subtotal	1 Year after*	Within 1 year*
Health care	6	3 (50.0)	3 (50.0)	2 (33.3)	1 (16.7)
Public health	10	9 (90.0)	1 (10.0)	1 (10.0)	0
Health policy	7	7 (100.0)	0	0	0
Health industry	6	6 (100.0)	0	0	0
Drug safety	3	2 (66.7)	1 (33.3)	0	1 (33.3)
Social welfare	8	6 (75.0)	2 (25.0)	2 (25.0)	0
Population policy	9	6 (66.7)	3 (33.3)	3 (33.3)	0
Total	49	39 (79.6)	10 (20.4)	8 (16.3)	2 ( 4.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number (%).  
\*Based on the date of enforcement of the law.

나, 법률상 계획 수 대비 미수립계획 비율은 50.0%로 가장 높았다. 법률의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인구정책분야의 미수립계획 3건은 모두 1년을 경과한 상태이고 보건의료정책분야의 1년이 경과한 미수립계획이 2건으로, 보건의료정책분야의 미수립계획이 인구정책분야보다 건수는 1건 적었지만, 법률상 계획 수를 고려하면 두 분야의 미수립계획 비율이 33.3%로 동일했다. 뒤를 이어 미수립계획의 비율이 높았던 분야는 사회복지정책(2건, 25.0%), 공공보건정책(1건, 10%) 순이었고, 각 분야의 미수립계획은 모두 법률의 시행시기가 1년을 경과하였다. 반면 건강정책분야와 보건산업정책분야는 미수립계획이 없었고, 의약품안전정책분야는 1건(33.3%)의 미수립계획이 있었지만, 관련 법률 시행 이전이므로 계획 수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관련 장기계획의 대부분은 관련 계획 간에서 연계하여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립상태이거나 서로 단절되어 분절적으로 수립 및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있다[7].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전공의 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들이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9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재하다.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은 수립되었고, 전공의 종합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Appendix 1).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립되지 않은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논의는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미수립계획이 많았던 보건의료정책분야와 인구정책분야 계획들의 검토와 정비가 시급하다. 또한 이러한 계획들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기존 계획들과 수립될 계획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수립과 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의 정책목표와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근시안적인 태도로 필요에 따라 혹

은 단절로 인한 산발적인 계획 수립은 수립과 이행 그 자체의 불확실성을 키울 뿐 아니라 정책의 혼란과 행정적 비용의 낭비,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와 다가올 미래까지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성된 계획을 통해 실천계획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결속력과 연속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2]. 또한 계획 수립의 근본에는 보건복지정책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한편 시대적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8]. 계획 수립 및 이행 주체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 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행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까지 순환하는 구조를 정립하여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ORCID**

- Hyeon Ji Lee: <https://orcid.org/0000-0002-7874-593X>;
- Selin Kim: <https://orcid.org/0000-0003-1376-2461>;
- Sung-In Jang: <https://orcid.org/0000-0002-0760-2878>;
- Eun-Cheol Park: <https://orcid.org/0000-0002-2306-5398>

**REFERENCES**

1.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 of the regional healthcare plans in Korea. Cheongju: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01.
2. Oh YM. Current status and way forward of the national healthcare plans.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7.

3. Lee K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40th anniversary health insurance. *Health Policy Manag* 2017;27(2):103-113.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103>.
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Sejong: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cited 2019 Aug 14].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in Korea (2016-2020).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6.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3rd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2016-2020 plan (revised version).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7.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No. 14558 (Jun 12, 2019).
8. Park EC. Presidential election and health policy. *Health Policy Manag* 2017;27(2):95-96. DOI: <https://doi.org/10.4332/KJHPA.2017.27.2.95>.

Appendix 1. Current status of long-term plans in health and welfare

분류	보건복지부 내 담당부서	법령(시행일)	계획명	주기	계획 진행 내용	유무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기본법 15조(2000. 7. 13.)	보건의료발전계획	5	2003.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2015.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보건사회연구원)	X
	규제개혁부 담당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5조(2019. 10. 24.)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	2006.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정책방향 및 과제)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X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 향상을 위한 법률 5조(2016. 12. 23.)	전공의종합계획	5	2017. 전공의종합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X
	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7조	환자안전 종합계획	5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0
	한의학정책과	한의학 육성법 6조	한의학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5	제3차 한의학육성발전 종합계획(16-20)	0
	보통정책과, 보충급여과	국민건강보험법 3조의 2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5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19-23)	0
	질병정책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18-22)	0
	질병정책과	결핵예방법 5조	결핵관리종합계획	5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18-22)	0
	질병정책과	암관리법 5조	암관리 종합계획	5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16-20)	0
	질병정책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조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5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18-22)	0
공공보건정책	질병정책과	허위진환관리법 6조	허위진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5	제1차 허위진환관리 종합계획(17-21)	0
	공공의료과	공공보건으로의 관한 법률 4조	공공보건으로 기본계획	5	제1차 공공보건으로 기본계획(16-20)	0
	응급의료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3조의 2	응급의료 기본계획	5	제1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 (18-22)	0
	생명윤리정책과	생명체지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조(2017. 2. 4.)	생명체지원관리 종합계획	5		X
	생명윤리정책과	혈액관리법 4조의 3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18-22)	0
	생명윤리정책과, 질병정책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7조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5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0
	간강정책과	지역보건법 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19-22)	0
	간강중진과, 정신간강정책과, 재정운영담당관, 간강정책과	국민건강증진법 4조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5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16-20)	0
	간강중진과	국민영양관리법 7조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5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7-21)	0
	간강중진과	간강진기법 11조	간강진진 종합계획	5	제2차 국가간강진진 종합계획(16-20)	0
보건산업정책	구강정책과	구강보건법 5조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5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17-21)	0
	정신간강정책과	정신간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7조	정신간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	5	정신간강 종합대책(16-20)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4조의 3)	0
	자살예방정책과	자살예방 및 생명중증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7조	자살예방 기본계획	5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16-20)	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4조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5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0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천연물산의 연구개발 촉진법 3조	연구개발촉진계획	-	제3차 천연물산의연구개발촉진계획(15-19)	0
	보건산업진흥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조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	5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18-22)	0
	보건산업진흥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10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5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17-19) (계획 수립 주기 조정 가능)	0
	규제개혁부 담당관, 식약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6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5	의료기기산업 종합 발전계획(18-22)	0
	해외의료총괄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	5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17-21)	0

(Continued to the next page)

Appendix 1. Continued

분류	보건복지부 내 담당부서	법령(시행일)	계획명	주기	계획 진행 내용	유무
의약품 안전정책	약무정책과, 식약처	약사법 83조의 4 (2019. 12. 12.)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5	2019. 6.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성과표 설정 연구(보건사회연구원 수행 계약)	X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5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5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16~20)	0
	검사제도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조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	5	제1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17~21)	0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기본법 16조	사회보장 기본계획	5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0
	복지정책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7조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5	제3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15~19)	0
사회복지정책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의 2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3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 (18~20)	0
	자립지원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7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5	제1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	0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법 10조의 2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5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 (18~22)	0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6조(2017. 12. 30.)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중점과제 26)에 포함, 독립적 계획 부재	X
	장애인복지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조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5	제4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15-9)	0
인구정책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조(2016. 12. 30.)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5	2018.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중앙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국립재활원, 목원대산학협력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 독립적 계획 부재	X
	인구정책총괄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	0
	인구정책총괄과	노후준비 지원법 5조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16~20)	0
	노인지원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2008. 8. 4.)	효행장려 기본계획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제3차 계획에 부재함)	X
	노인지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	묘지·화장시설·봉인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5	제2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안) (18~22)	0
	요양보호제도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6조	장기요양 기본계획	5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18~22)	0
	치매정책과	치매관리법 6조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	0
	출산정책과	모자보건법 5조(1986. 11. 11.)	모자보건사업 기본계획	5	2019. 모자보건사업, 1년 단위 사업계획은 존재, 장기계획은 부재	X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복지법 7조	아동정책 기본계획	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0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조(2012. 7. 15.)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X

\*Department i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